

광역상수도

요금 제도

한눈에 보이기



수돗물공급규정 바로가기

1. 수돗물 사용계약 정의 (수돗물공급규정 제5~7조의2)

□ 수돗물 계약 및 공급대상 주체

- (1종 수돗물) 지방자치단체 고객
- (2종 수돗물)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고객

□ 수돗물의 종류

- (원 수) 수처리를 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수돗물
- (정 수) 원수를 음용에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 (침전수) 원수를 침전하여 공급하는 정수가 아닌 수돗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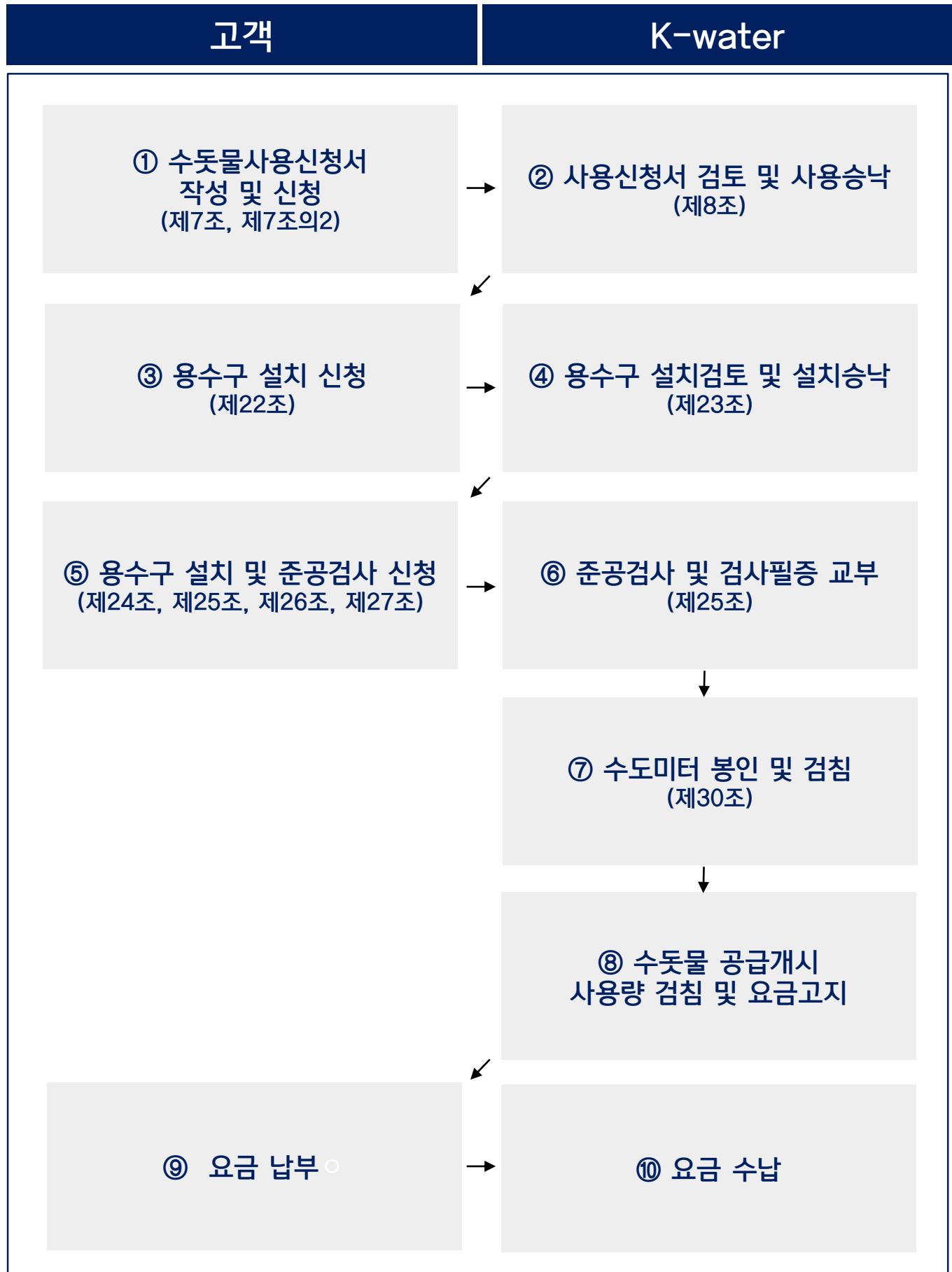
□ 계약형태

- (단기계약) 1년 이내, 모든 고객 계약 가능
- (장기계약) 2~5년, 1종 수돗물 고객(지방자치단체 고객)만 계약 가능



II. 수돗물 사용계약 절차 (수돗물공급규정 제7조)

□ 수돗물 사용신청 흐름도



Ⅲ. 요금제도 (수돗물공급규정 제7조의2)

□ 요금제도 비교

구 분	단기계약	장기계약
가입대상	1종, 2종	1종 고객(지방자치단체)
계약기간	1년(자동연장)	2~5년
계약량 결정	배분계획량 범위 내	규정에 따라 산출*
계약량 변경	연간 6회 이내	1년 단위 재산정
수도요금	기본요금+사용요금+초과요금	기본요금+사용요금
요금특징	계약량의 120%이상 초과 사용시 초과요금 발생	요금할인 적용 초과요금 없음

* 계약량 = (전년도 일평균사용량+ 전년도 최대사용월의 일평균사용량) / 2

** 2종 수돗물 고객의 경우, 요금고지 시 수도요금과 수계별 물이용부담금이 함께 고지

Ⅳ. 장기계약 할인 (수돗물공급규정 제7조의2, 제39조)

□ 장기계약

- 계약량에 따라 기본요금이 고정 부과되는 제도로 1종 고객(지방자치단체)만 가입 가능하며, 요금의 일정액을 할인하는 제도

□ 할인효과 = 요금할인(①또는②) + 초과요금 미부과

① 기본요금 할인

- 할인액 = 계약량 x 기본요금 단가 x 할인율*

* 할인율 = (기본할인율 6% + 추가 할인율) x (계약기간(년)/5)

** 추가 할인율 = 계약량 기준 할인율, (계약량 - 50,000m³/일) / 50,000m³/일

② 약정할인

- 자체 노후시설 폐쇄 등으로 계약량 대비 10%이상 추가사용 계약시 적용
- 할인액 = (사용량 - 약정물량) x 수돗물 요금단가 x 20%

V. 요금의 계산 (수돗물공급규정 제39조)

□ 광역상수도 요금 단가 ('16.9.23.부터 적용)

(단위 : 원/m³)

구 분	기본요금	사용요금	계
원 수	70	163.7	233.7
정 수	130	302.8	432.8
침전수	98	230	328

□ 요금계산 방법

구 분	단기계약	장기계약
요금구조	기본요금 + 사용요금 + 초과요금	기본요금 + 사용요금
기본요금	계약량* x 기본요금 단가 (월간 사용량의 120% 한도)	계약량 x 기본요금 단가
사용요금	사용량 x 사용요금 단가	
초과요금	초과 사용량 x 사용요금 단가 (계약량의 120% 초과 사용시 발생)	미발생
요금할인	없음	기본요금 할인 또는 약정할인

* 월간 계약량 초과 사용시 기본요금 계산방법이 변경됨(하단의 단기계약 요금계산 방법 참조)

※ 단기계약 요금계산 방법

사용량	기본요금	사용요금	초과요금
계약량의 100% 이하	기본요금 단가 x 계약량		미발생
계약량의 100~120%	기본요금 단가 x 사용량	사용요금 단가 x 사용량	미발생
계약량의 120% 초과	기본요금 단가 x 계약량 x 120%		초과 사용량 x 사용요금 단가 (계약량의 120% 초과시)

VI. 요금의 감면 (수돗물공급규정 제50조, 제51조)

□ 요금감면

구 분	내 용	감면기준
공익성	특별재난지역 등 일시적인 경우로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그밖에 준하는 경우	공사가 정하는 금액
환경개선용수	1종 수돗물 고객이 하천환경개선 생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수도시설을 활용한 일시적 원수공급을 계약한 경우	계약량 범위 내에서 사용한 수돗물 요금의 50%
중수도	2종 수돗물 고객이 직접 산업·생활배수 등을 처리해서 순환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중수도량 x 기본요금 단가의 30%
동일급수권	동일급수권*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3개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	월간 계약량(일 5,000m ³ 한도) x 기본요금 단가 x 감면율 (감면기간 5년)

* 「수돗물 공급규정」 제18조(수급지점 및 수도시설 연계운영 등)제3항에 해당하는 고객

VII. 요금의 납부 (수돗물공급규정 제45조~제52조)

□ 요금고지 방법 : 일반지로, 전자고지

- 전자고지 신청 시 200원 할인(일반지로와 전자고지 병행하는 경우 요금할인 불가)

□ 요금납부 방법 :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카드결제*

- 자동이체 신청 시 1% 요금할인(5,000원 한도)

* 카드결제의 경우, 2종 수돗물을 사용하는 고객만 납부 가능

□ 연체금 부과기준

- 납기일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를 연체일수로 하여 일할 계산

구 분	내 용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	미납요금 x 2% x (연체일수 / 월력일수)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	(미납요금 x 2%) x [미납요금 x 1% x (처음 1개월 경과한 연체일수 / 2개월째 월력일수)]
납기일 다음날부터 2개월 경과후	미납요금 x 3%

□ 선수금

- 고객이 희망할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요금을 선납 가능하며 할인 적용됨
- 할인을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에금이 평균 이자율 적용(변동금리)
- 신청 및 처리 프로세스

- ① 고객 → K-water : 수도요금 선납신청(기간 및 금액 명시)
- ② K-water → 고객 : 선납 대상기간, 할인율 및 납부계좌 안내

□ 요금 이의신청 및 재계산

- 공사가 고지한 요금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고객이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통지하며
과오납금은 당월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차액을 가감
- *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는 시중은행 해당기간 정기에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불

※ (참고) 「수돗물 공급규정」(한국수자원공사규정 제37호, 2022. 8. 9.시행)



광역상수도

**요금
제도**

**한눈에
보기**

